

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인지도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,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,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수권자본금 확대.(안 제4조)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장·이사·감사의 임기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장·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조항 정비.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
- 다. 공사의 사업에 교육분야와 관광숙박업을 추가함.(안 제19조)
- 라. 손익금의 처리 중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.(안 제2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, “인천광역시관광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관광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사”를 “인천광역시관광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,600억원”을 “6,500억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1년을 단위로 연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」에 의거 추천된 자”를 “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포함하고,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1미만으로 한다”를 “포함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.

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마목 중 “훈련”을 “교육훈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여 제1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와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관광숙박업

제20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5조 제목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 중 “부채상환, 사업준비 등을 위한”을 “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·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”로 하여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

제5조제1항제14호·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·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·제34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외의 부분·제19조제1항제11호(종전의 제10호)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관광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 ----- 인천광역시관광공사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 (법인격)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</p>	<p>제2조 (법인격) 인천광역시관광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-----</p>
<p>제4조 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,600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4조 (자본금) ① ----- -- 6,500억원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(정관)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13. (생략) 14. 기타 필요한 사항 ② (생략)</p>	<p>제5조 (정관) ① ----- ----- 1.~13. (현행과 같음) 14. 그 밖에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등기) ① (생략)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6조 (등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그 밖에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----- -----</p>
<p>제7조 (임원) ① (생략) ② 사장·이사·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 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1년을 단위로 연임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 (사장)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」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 (사장) ① ----- ----- 영 제56조의 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 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 이사는 시의 실·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 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,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 (이사) ① ----- ----- ----- 포함한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.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 (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11조 (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 ----- 각 호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 (이사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	<p>제14조 (이사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	<삭 제>
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 (사업) ① 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	제19조 (사업) ① -----
1. 관광자원개발과 운영 사업 가.~다. (생략) 라. 기타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개발	1. -----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그 밖에</u> -----
2. 특수관광 시설개발과 운영 사업 가.~다. (생략) 라. 기타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	2. -----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그 밖에</u> -----
여가 시설	-----
3. 관광진흥사업 가.~라. (생략) 마. 관광인력의 양성과 <u>훈련</u>	3. ----- 가.~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 <u>교육훈련</u>
바. (생략)	바. (현행과 같음)
4. 국제회의업	4. <u>관광숙박업</u>
5. 체육시설업	5. -----
6. 항공관련 사업	6. -----
7.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·지원	7. -----
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	8. -----
9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	9. -----
10. 위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과 감리 등의 업무	10. -----
11.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	11. --- <u>각 호</u> -----
	12. <u>그 밖에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-----

현행	개정안
<p>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자 한도는 영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다.</p>	<p>②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0조 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·수탁계약에 의한다.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0조 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 (경비의 부담)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(생략) ③ <u>기타</u>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24조 (경비의 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5조 (<u>계리</u>의 원칙)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<u>계리</u>한다.</p>	<p>제25조 (<u>회계처리</u>-----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</u> <u>계처리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</u>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제26조 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부채상환,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4조 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② ----- ---- <u>처리</u>----- -----</p> <p>제26조 (손익금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</u></p> <p>4. <u>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·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</u>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 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기업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○ 제59조(임기 및 직무) ○ 제67조(손익금의 처리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기업법 시행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○ 제61조(이익금의 처리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별 첨”</p>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 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3.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
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③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7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,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1조(이익금의 처리) ①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,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,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·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.